

[가상화폐분쟁] 가상화폐, 암호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+ 불법 유사수신행위 + 투자사

기 검찰보도자료



## 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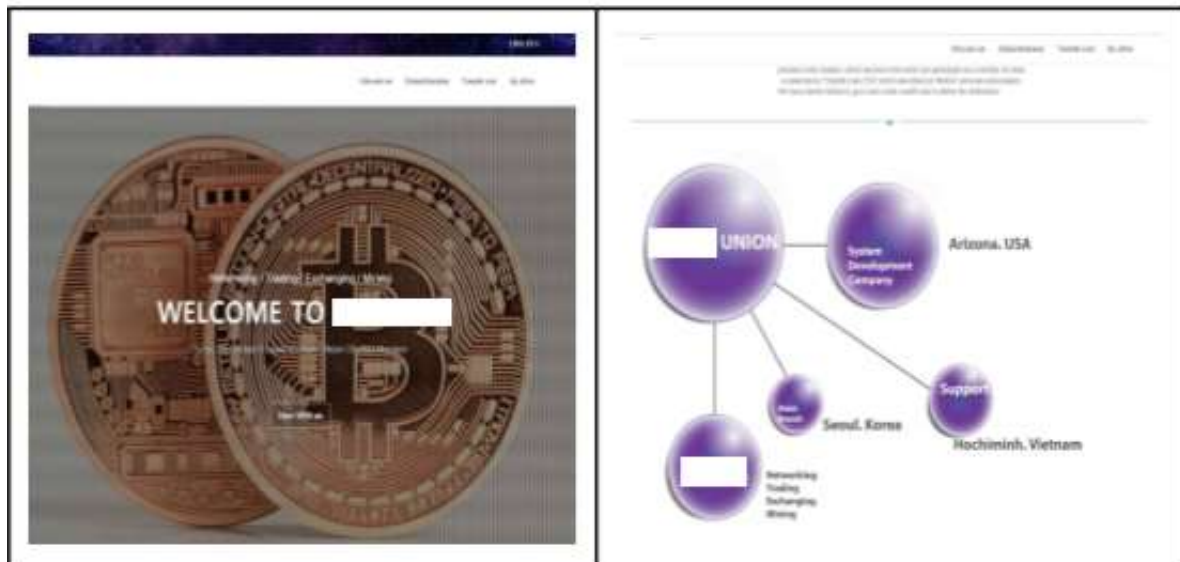
## 주요 수사 내용

-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 회사로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현혹

- “‘○○○월드’는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회사로 수당을 가상화폐인 ◇◇◇◇코인으로 지급하는데, 가치상승이 예상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”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현혹

※ 대표, 임원들이 ‘스티브 강’, ‘그레이스 리’, ‘테이’ 등의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였고, 외국에 서버를 두고,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을 영어로 기재

<‘○○○월드’ 인터넷 홈페이지>



-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다고 홍보하였으나, ‘○○○월드’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개설된 실체 없는 가상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으며, 압수·수색 등에 대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두고,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함

- 원금보장(CDR : Coins of Damage Relief)을 약속하면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였으나 투자원금보장 및 고수익은 사실상 불가능

첨부: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

기업법무, 기술법무, 벤처기업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